



3-2 외국인 등록의 내용을 확인 · 증명하고 싶을 때

개정입관법 시행후 외국인등록원표는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보유하는 행정문서가 되어 「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2 조에 근거하여 개시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개시청구 창구는 법무성 대신관방 비서관 개인정보 보호계입니다.

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 내 「외국인등록법 폐지 후의 외국인등록 원표의 개시청구에 관한 알림」 (http://www.moj.go.jp/hisho/bunsho/hisho02_00016.htm) 을 참조하십시오.